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0768 http://thesafezone.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9년 7월 31일 ^{1004gm@exonrnd.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11.

[세이프존]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엑손알앤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25,

주식회사 엑손알앤디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 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 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 · 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 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 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 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80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1-362-6833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1-417-211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세이프존팀 031-362-6833

목 차

| I. | 가맹본부의 | 일반 현황 |
|-------|--------|--------------------------|
| п. | 가맹본부의 | 가맹사업 현황 |
| ш. | 가맹본부와 |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2 |
| IV. | 가맹점사업 | 자의 부담 12 |
| ٧. | 영업활동에 | 대한 조건 및 제한 19 |
| VI. | 가맹사업의 |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35 |
| VII. | 가맹본부의 |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7 |
| VIII. | 교육・훈련(| 게 대한 설명40 |
| IX. | 가맹본부의 | 직영점 현황41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 | .지 | 주 소 | | | | | |
|------------|----------|-------|-------------------|---------|---------------|--------------|--------------|--|
| | 세이프존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80 | | | | | |
| (조)에 소 아이를 | 법인 설립등기일 |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 |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 | |
| ㈜엑손알앤디 | 2010. 03 | 3. 26 | 2010. 04. 01 | 신동학 | 031-8042-2094 | | 031-417-2112 | |
| | 법인등록번호 | 11011 | 1-4314350 | 사업자등록번호 | | 220-87-97018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11 0 01 | |]동학 세이 <u>프존</u>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80 | | | | |
| 사용인 (임원) | 신동학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66) | | | 신동학 | 031-362-6833 | 031-417-2112 | |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세이프존]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세이프존 | |
| 상 호 | 세이프존 00점 | |
| 상표(서비스표) | Sofe zone NOS GRE ON MINIE MI |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0-1565771호 |
| 광 고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10,455,128 | 7,336,340 | 3,118,788 | 3,215,061 | 509,986 | 250,200 |
| 2022년 | 10,019,889 | 6,369,856 | 3,650,032 | 12,625,818 | 770,705 | 531,244 |
| 2023년 | 16,230,085 | 9,039,607 | 7,190,477 | 11,729,805 | 1,258,286 | 852,316 |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 사업경력 | | |
|---------------|----------|------|--------------|------|---------|--|
| 권천 시 구 |) 이금 | 2 7H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 가맹사업 | 신동학 | 대표이사 | 2010.4. ~ 현재 | 대표이사 | 게이고조 미교 | |
| 관련 임원 | 신공역 | ᅵᄪᅺ | 2010.4. ~ 연세 | 네쁘이지 | 세이프존 대표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수(명) | 지이스/대) |
|---------------|-----|------|--------|
| 시겝 | 상근 | 비상근 | 직원수(명) |
| 2023년 12월 31일 | 1 | 0 | 27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세이프존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세이프존 (상표권) | 제44류 | 2019. 1. 17 출원 2020. 1. 17. 등록 | 출원 제40-2019-000 9017호 등록 제40-1565771 호 | (주)엑손알앤디 | 2030.01.17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세이프존] 가맹사업 현황

1. (세이프존)을 시작한 날: 2019년 9월 1일

2. (세이프존) 연혁

|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엑손알앤디 | 세이프존 | 신동학 | 2019.09.01. ~ 현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80 (목내동) |

3. (세이프존)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
| niol n x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 세이프존 | 이미용 | 염색제품 | |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세이프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7] Ol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지역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371 | 371 | 0 | 335 | 335 | 0 | 331 | 331 | 0 |
| 서울 | 40 | 40 | 0 | 34 | 34 | 0 | 33 | 33 | 0 |
| 부산 | 33 | 33 | 0 | 32 | 32 | 0 | 32 | 32 | 0 |
| 대구 | 26 | 26 | 0 | 22 | 22 | 0 | 21 | 21 | 0 |
| 인천 | 15 | 15 | 0 | 13 | 13 | 0 | 13 | 13 | 0 |

| 광주 | 31 | 31 | 0 | 29 | 29 | 0 | 29 | 29 | 0 |
|----|----|----|---|----|----|---|----|----|---|
| 대전 | 14 | 14 | 0 | 13 | 13 | 0 | 13 | 13 | 0 |
| 울산 | 21 | 21 | 0 | 21 | 21 | 0 | 21 | 21 | 0 |
| 세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기 | 64 | 64 | 0 | 60 | 60 | 0 | 60 | 60 | 0 |
| 강원 | 3 | 3 | 0 | 1 | 1 | 0 | 1 | 1 | 0 |
| 충북 | 11 | 11 | 0 | 12 | 12 | 0 | 12 | 12 | 0 |
| 충남 | 24 | 24 | 0 | 21 | 21 | 0 | 21 | 21 | 0 |
| 전북 | 8 | 8 | 0 | 7 | 7 | 0 | 7 | 7 | 0 |
| 전남 | 37 | 37 | 0 | 33 | 33 | 0 | 33 | 33 | 0 |
| 경북 | 5 | 5 | 0 | 3 | 3 | 0 | 3 | 3 | 0 |
| 경남 | 28 | 28 | 0 | 24 | 24 | 0 | 22 | 22 | 0 |
| 제주 | 11 | 11 | 0 | 10 | 10 | 0 | 10 | 10 | 0 |

5. 바로 전 3년간 [세이프존]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344 | 28 | 0 | 1 | 0 | 371 |
| 2022 | 371 | 83 | 116 | 3 | 1 | 335 |
| 2023 | 335 | 1 | 0 | 5 | 0 | 331 |

6. [세이프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최근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
|----|----------------|-------------------------|-----|--------------|----|-------------------------|----|----|
| 지역 | 2023년말 가맹점수 | 연간 평균 | 매출액 | 연간 편 매출액(| - | 연간 ^표 매출액(| - | 비고 |
| | | 연간 평균 | 면적 | 상한 | 면적 | 하한 | 면적 | |

| | | 매출액 | 3.3m ² 당 | 3.3m ² 당 | 3.3m² 당 | |
|----|-----|-----|---------------------|---------------------|------------|--|
| 전체 | 331 | | | | | |
| 서울 | 33 | | | | | |
| 부산 | 32 | | | | | |
| 대구 | 21 | | | | | |
| 인천 | 13 | | | | | |
| 광주 | 29 | | | | | |
| 대전 | 13 | | | | | |
| 울산 | 21 | | | | | |
| 세종 | 0 | | | | | |
| 경기 | 60 | | | | | |
| 강원 | 1 | | | | | |
| 충북 | 12 | | | | | |
| 충남 | 21 | | | | | |
| 전북 | 7 | | | | | |
| 전남 | 33 | | | | | |
| 경북 | 3 | | | | | |
| 경남 | 22 | | | | | |
| 제주 | 10 | | | | | |

[당사 가맹점은 제공되는 제품의 판매와 이미용 서비스 매출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용실이라는 특성상 기술에 대한 서비스 매출 비율의 차이가 가맹점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본사에서는 출고된 제품 외 정확한 매출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연평균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8. [세이프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세이프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 평균 영업기간 [©] |
|------|-------------------------|----------------------|
| 2023 | 331 | 1421 |

9.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2022년 9월부터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세이프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 1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1 |
| 합계 | | | 1,135 | (비공개) | _ | |
| | 경기도 50m2 to | (비공개) | 경7 压 80max | (비공개) | | (비공개) |
| 광고 | 37 <u>15</u> 90000 | (비공개) | 37 <u>15</u> 80889 | (비공개) | | (비공개) |
| | 경기도 ************************************ | (비공개) | 37 <u>L</u> 60000 | (비공개) | | (비공개) |

[당사는 가맹사업(세이프존) 외, 후원방문판매업 및 OEM/ODM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맹사업에 관련된 광고비 및 판촉비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손익계산서상의 광고판촉비를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재한 액수에 해당 가맹사업 외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지점 또는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국민은행 | 안산사동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0 | 031-408-7885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 [별첨2]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는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 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법률에 따라 가맹금 예치를 하므로 별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세이프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간판의 설치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교육비에 한함)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급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일반 가맹사업자 : 300 -행정구역상 군, 시나 구 이상의 지사를 겸하는 가맹점 사업자 : 해당없음 | | | | |
| 최초 교육비 | -일반 가맹사업자: 300 -행정구역상 군, 시나 구 이상의 지사를 겸하는 가맹점사업자: 해당 없음 | 계약 체결일의 익일까지 |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교육이 시작된 경우 | |

- 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 보증금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일반 가맹점사업자 : 300 -행정구역상 군, 시나 구 이상의 지사를 겸하는 가맹점사업자 : 해당없음 |
| 최초 교육비 | -일반 가맹점사업자 : 300 -행정구역상 군, 시나 구 이상의 지사를 겸하는 가맹점사업자 : 해당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당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일반 가맹사업자 : 6,700~7,000 -행정구역상 군의 지사를 겸하는 가맹점 사업자 : 12,200~12,500 -행정구역상 시나 구이상의 지사를 겸하는 가맹점 사업자 : 23,200~23,500 | 해당없음 | | | |
| 초도물품 구입비 | 가맹본부 | -일반 가맹사업자 : 5,500 -행정구역상 군의 지 사를 겸하는 가맹점 사업자 : 11,000 -행정구역상 시나 구 이상의 지사를 겸하는 가맹점 사업자 : 22,000 | 해당없음 | 계약 체결일의 7일 이내 |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
| 간판 | 가맹점사업 자가 정한 자 | 1,200~ 1,500 | 해당없음 | 별도 계약에 따름 | 별도 계약에 따름 | |

위 표의 금액 중 간판은 일반적인 시장의 가격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를 내용으로 하는 간판을 설치함에 있어 제3자와 스스로 계약

- 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비용 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세이프존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합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할 경우에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ㆍ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9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세이프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분납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맹검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 당사와의 합의로서 가맹금을 분납하도록 정할수는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상표사용료 | | 해당없음 | | | | |
| 월 가맹비 | ㈜엑손알앤디 | 33만 | 매월10일 | 가맹해지 시 해당 월가맹비 반환 | | |
| 리스료 | | 해당없음 | | | | |
| 광고 분담금 | | 해당없음 | | | | 구체적인 내용은 33~34쪽 8.광고 및 판촉활동 참고 |
| 판촉분담금 | | 가맹점부담 | | | | 구체적인 내용은 33~34쪽 8.광고 및 판촉활동 참고 |
| 교육훈련비 | ㈜엑손알앤디 | 실비 | 교육 실시 5일 이전 | 교육 취소시 | | 교육 필요시 지급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가맹점사업자 가 정한 자 | 실비 | 별도 계약에 따름 |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자 |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 | | | |
| 지연이자 [®] | ㈜엑손알앤디 | 연2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필수 물품 등을 직접 제조 및 생산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차액가맹금의 발생은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분기별 1회 | |
| 상품관리(진열 | 가맹점 내 상품 진열 및 상품 보관 | 수시 | |
| 등) | 감독 | <u> </u> | |
| 고객서비스관리 | 상품 판매 및 상품을 이용한 용역 | 수시 | 문의 : 세이프존팀 |
| | 제공에 있어 서비스 감독 | 7-71 | (031-362-6833) |
| l 위생관리 | 상품 판매 및 상품을 이용한 용역 | 수시 | |
| T/ ö 건 Y | 제공을 위한 가맹점 내 위생 감독 | <u>ナ</u> ハ | |
| 점포외관 등 관리 | 간판 등 외관 감독 | 수시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는 귀하에게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기 위한 금액을 별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세이프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엑 손알앤디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여야 합니다. 반품은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의 금액(10%~80%)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세이프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세이프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세이프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세이프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별첨 3 참조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2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 (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타 가맹점사업자 | 별첨 3 참조 | 거래상대방별로 | 1회 위반: 2회 이상 서명 | |
| 가맹본부의 경쟁 사업자 (그 가맹점사업자 포함) | 별첨 3 참조 |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 시정요구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2회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별첨 3 참조 | 별첨 3 참조 | 변경, 추가시 가맹본부 | |
| 三 | 5.9 2.97 | 사전통보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이하 어조 베이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동일한 업종 범위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이미용업 | 세이프존 |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읍, 면, 동당 2점포(이격거리 1km 이상)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세이프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세이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② |
| 2023 | 100% | 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 2023 | 100% |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세이프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 |

| 니까? | |
|---|--------------|
|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_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6조 1항 1호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26조 1항 2호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20조 1명 3보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6조 1항 4호 |
| 세이프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6조 1항 5호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 계약 | 조문 |
|---|------|-----|----------------|
| ○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7조 | 1항 | 1호 |
| ○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켜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 27조 | 1하 | 2 o |
| 얻는 등 가맹본부의 신뢰를 해하는 경우 | 2/35 | 1 % | ᇈ |
| ○ 가맹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받 | | | |
| 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 27조 | 1항 | 3호 |
| 아니하는 경우 | | | |
|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27조 | 1항 | 4호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7조 | 1항 | 5호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27조 | 1하 | 6ē |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2,1 | 10 | O.T.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 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즉시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0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7조 2항 1호 |
| 0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27조 2항 2호 |
| 0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27 |
| | | 조 2항 3호 |
| ブレ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27조 2항 4호 |
| 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 27조 2항 5호 |

| | 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 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 | | | |
|---|--|-----|----|----|
| С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27조 | 2항 | 6호 |
| С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27조 | 2항 | 7호 |
| С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울 경우 | | 2항 | 8호 |
| С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27조 | 2항 | 9호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사전 서면합의로서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4 |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가량 소요) → 가 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므이 : 세이교조티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상속사실 통지 → 당사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 가맹본부는 | |

| | | 상속인과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 대리행사 | 불가 | | |
| 업무위탁 | 불가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세이프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세이프존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세이프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ਖ] ਹ |
|---------|----------|------------------|------------------------|
| 2명 이상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 · 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재고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재고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분기별 1회 | 본부 또는 지사 | |
| 상품관리(진열 등)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상품 확인 → 완료 | 수시 | 본부 또는 지사 | |
| 고객서비스관리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서비스 확인 → 완료 | 수시 | 본부 또는 지사 | |
| 위생관리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위생 확인 → 완료 | 수시 | 본부 또는 지사 | |
| 점포외관 등 관리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점포외관 등 확인 → 완료 | 수시 | 본부 또는 지사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세이프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및 지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촉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점사업자의 기타 개별 행사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고객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세이

프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액(부가세 제외)의 10%(당사자간 별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를 마일리지로 제공하며, 해당 고객은 이를 해당 가맹점에서 세이 프존 상품을 재구매함에 있어 재구매 대상 상품가격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판촉활동을 시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7 日 | 광고 | 부단 | 감비율 | 분담 절차 | нГэ |
|----------|-----------------------------|-----------------|-------|---|---|
| 구분 | ^{구군}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 | 한참 결사 | 비고 | |
| | 상품광고 | 전액부담 | 없음 | | 대중매체 광고 |
| 광고 활동 |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부담 | 없음 |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
| |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ಪ್ಕ ಮಿ | 마일리지 제공 | 었 <u>으</u> 없 | 전액부담 | | 해당 가맹점에서만 상품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 |
| 판촉 활동 | 기타 개별 행사 | SH 으 | 전액부담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 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 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 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ㅎ 저체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 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 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에 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최초 가맹금(가맹계약상 최초가 맹금을 의미하며, 초도물품구입비를 포함함)의 1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47일 내외 | 13p~15p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46 ~ 45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 ~ 31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 가맹금 예치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D-29(1일)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 ~ 25(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 ~ 5(20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 ~ 4(3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추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또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비고 |
|--|------------------|--|--|---|----|
| 이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 적 연기 사업이나 결 이 연기 | 기의 교체비 용을 제외한 |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 |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 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 은 지급하지 아 니 하 거 나 이미 지급한 | |

| 점포환경개선 | |
|-------------|--|
| 이 끝난 날부 | |
| 터 90일 이내 | |
| 에 가맹본부 | |
| 부담액을 지 | |
| 급 | |
| <분할지급 시 | |
| 절차> | |
| ㅇ가맹점사업자 | |
| 의 비용 청구 | |
| (공사계약서 | |
| 등 공사비용 | |
| 을 증빙할 수 | |
| 있는 서류 첨 | |
| 부) → 3차에 | |
| 기 | |
| 부 부담액을 | |
| 분할 지급 | |
| (1차 : 청구일 | |
| 로부터 90일 | |
| 이내, 총 부담 | |
| 액의 30%, 2 | |
| 자 : 1차 지급 | |
| 일로부터 60 | |
| 일 이내, 총 | |
| 부 담 액 의 | |
| 30%, 3차 : 2 | |
| | |
| 차 지급일로부 | |
| 터 60일 이내, | |
| 총 부담액의 | |
| 40%)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 문의: 세이프존팀 (031-362-6833)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세이프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은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정책 ^① | 주요 내용 [©] | 지원조건 ^③ | 지원기간 | 지원내용 ^④ | 비고 ^⑤ |
|-------------------|--------------------|-------------------|------|-------------------|-----------------|
| | 해당없음 | | | |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세이프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 상품 소개 및 사용방법 소개 상품 주문 등을 위한 전산 사용방법 등 | 실습교육 집단 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 정기 교육(일반) | 신제품 소개 및 사용방법 소개 판촉활동 등 프로모션 교육 | 실습교육 집단 강의 | 월 1회 | 필수 교육 |
| 정기 교육(특별) | 상동 | 상동 | 분기별 1회 | 필수 교육 |
| 특별 교육 | 상동 | 상동 | 수시 |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세이프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8시간 | 일반 가맹점사업자에 한하여 300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 교육(일반) | 4시간 | 해당 없음 | 매월 필수적으로 이수 |
| 정기 교육(특별) | 1박 2일 | 실비 | 분기별 필수적으로 이수 |
| 특별 교육 | 4시간 | 실비 |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 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②

(단위: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해당없음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③ |
|----------------------|-----------------|
| | |
| 해당없음 | |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세이프존팀(031-362-683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thesafezone.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 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